

정책·성과중심의

- 2016년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공보담당관)**

(2015년 12월 3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 2016년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검토보고서 (공보담당관)**

1. 안건명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공보담당관 소관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11월 17일(화),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0일(금)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2014. 6. 3. 법률 제12738호) 제127조
- 『지방재정법』 (2015. 5. 13. 법률 제13283호) 제36조
- 『저작권법』 (2014. 7. 1. 법률 제12137호) 제105조

5. 2016도 마포구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총계	498,355	455,805	42,550	9.34%
일반회계	429,153	393,930	35,223	8.94%
특별회계	69,202	61,875	7,327	11.84%
의료급여기금	319	415	△96	△23.17%
마포농수산물시장	6,699	7,906	△1,207	△15.27%
주차장	57,244	53,553	3,691	6.89%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4,847		4,847	순증
관광사업	93		93	순증

6.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 총괄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 예산액	2015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641,657	1,456,654	185,003	12.70%

나. 일반회계 세부사업 예산안

▣ 공보담당관

(단위:천원)

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2016년도 예산액	2015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1,641,657	1,456,654	185,003	12.70%
구비	1,641,657	1,456,654	185,003	12.70%
구정홍보 기능 강화	1,545,639	1,363,978	181,661	13.32%
언론보도 지원활성화	584,615	559,130	25,485	4.56%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	961,024	804,848	156,176	19.40%
행정운영경비(공보담당관)	96,018	92,676	3,342	3.61%
기본경비(공보담당관)	96,018	92,676	3,342	3.61%

< 주요 증감내역 >

(단위:천원)

사업명	2016년도 예산액	2015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보담당관>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홍보업무 활동비)	19,000	14,400	4,600	31.94%
언론 모니터링 강화				
사무관리비	515,441	495,000	20,441	4.13%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iTV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5,360	38,720	6,640	17.15%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9,000	0	9,000	순증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	0	1,900	순증
연구용역비	120,000	0	120,000	순증
기타보상금	13,700	0	13,700	순증

[검토보고]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예산 규모>

- 201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4,291억 5,300만원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16억 4,16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5,665만 4천원보다 1억 8,50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

-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구정홍보 기능강화 사업 세출예산액은 15억 4,56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3억 6,397만 8천원 대비 13.32%에 해당하는 1억 8,16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함
-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액은 9,601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67만 6천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33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기본 경비 예산 중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가 증가한 것임

[주요 증·감 내용]

1. 주요 증액내용은

- 1) 구정 언론보도 지원 강화를 위한 홍보업무활동비 460만원
- 2) 언론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44만 1천원

< 산 출 기 초 >

- 뉴스콘텐츠 라이선스(중앙지) : 16만 5천원×13개사×12월= 2,574만원
- 뉴스콘텐츠 라이선스(광역지) : 19,800원× 8개사×12월=190만 800원
- 3) 마포 iTV 방송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664만원이 증액 편성

< 산 출 근 거 >

- ▶ 셋톱박스(방송 수신기) 구매 : (550천원*10기=5,500천원)
 - 2007년에 구입한 장비로 자체 점검한 결과 고장률 30%이고 또한 고장 시 부품단종으로 수리 불가로 10대 구매(현재 총 93대 운영 중)
 - ▶ 방송자동송출기 구매
 - HD급 방송자동송출기 1기×2,200만원
 - 기 보유제품의 내구연한(2007년 구매) 경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1기 대체구매
 - ▶ HD영상편집기 구매
 - 기 보유제품의 내구연한(2007년 구매) 경과로 원활한 방송 운영 및 방송사고 예방을 위해 5대 대체구매
- 4) 구취장 교체를 위한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4,46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2. 주요 감액내용은 특별한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으로는 공보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 '공보의 기능'은 마포구의 주요 시책 사업과 생활정보 및 구의회 의정활동 등을 주민에게 홍보(2015년 제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 등 총 5,682건/ 내 고장 마포 12회 발간 등)를 잘 하여 구와 주민이 함께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공유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종종 홍보부족 등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은 물론 구정 업무에 대한 불신으로 마포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마포구 업무추진비는 타 구와 비료하면 최하위 수준임)를 타 구 평균수준으로 상향하여 전년도보다 31.94% 증가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홍보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됨

- 그 동안 공보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구 중점 관심 홍보사항 등에 대한 신문 및 인터넷 뉴스 등 기사를 수기로 스크랩하거나 편집하여 ‘오늘의 뉴스’를 직접 제작하고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해 오고 있었으나, 2014. 7월부터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뉴스 콘텐츠를 구매하려 이용해야 하는 바, 내년도 예산에 방송 및 신문 라이선스 구매비를 전년도보다 4.13% 증가한 2,04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포 iTV 방송장비인 셋톱박스(방송 수신기), 방송자동 송출기, HD영상편집기는 내구연한 5년을 경과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원활한 방송 운영을 위해 새로 구매·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664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법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임

- 또한 마포구 휘장 교체를 위한 도시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은 2015년도 제196회 마포구의회 구정질문 시 현재 마포구 휘장이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에 부적합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보담당관에서 마포구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스터디 그룹 연구 결과 및 휘장 개발 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2016년도에 마포구 휘장물(휘장, 캐릭터) 등에 대한 통합브랜드 개발을 마치고 2017년도부터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등 휘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마포구 휘장개발로 현재의 오래된 마포구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이미지를 상징하는 마포구로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국제 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마포구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비 1억 4,46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 령

저작권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보도총괄

(단위 : 건수)

구분	신문			방송			연합뉴스 등 기타
	소계	중앙지	지방지	소계	지상파	케이블	
합계	3,879	857	3,022	917	126	791	886

2. 마포ITV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현황

(2015.11.25현재)

년도별	접속인원		콘텐츠 제작	뉴스기사 제작건수	UCC 홈페이지 접속인원		UCC 게재
	일일	연간			일일	연간	
2015년	3,366명	1,077,231명	465편	848건	611명	134,513명	208건

3. 내고장 마포 배부현황

- 내고장마포 월 80,000부(발행일자 : 매월 25일)
- 배부대상 : 구민(세대수 171,918의 45.5%), 각 유관기관 및 구독희망자 등

4. 마포구 휘장 개발 사업 추진 현황

▣ 추진근거

- 제196회마포구의회 구정질문(2015.5.11 구정질문 - 류호열 의원)
현 휘장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에 부적합하므로 교체가 필요함
- 마포구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스터디 그룹 연구 결과 보고
(공보담당관-7928, 2015. 9. 4)
- 구 상징물 개발시 관내 유치원생 등 참여기회 마련
(구청장 지시사항 제85호, 2015. 9. 15)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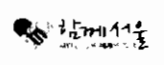



- 청동오리를 모티브로 한 현재 휘장은 마포의 상징성 나타내기에 부족함
- 디자인 노후화 및 과거 이미지
 - 기존 휘장 등은 세련미가 없고 오래된 이미지로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음
- 타도시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로 국제도시로 성장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추진방향

- 구민 아이디어 공모 - 유치원, 초중고교 등 포함
- 마포를 대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참여형 통합브랜드 개발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유연한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마포구 상징물(휘장,캐릭터), BI(브랜드슬로건) 등 통합브랜드 개발

구분	휘장(CI)	BI	캐릭터	정책슬로건
서울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 추진방법

- 디자인 전문업체에 개발 용역 및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병행

○ 주요내용

- 사전 자료조사 및 현황 분석, 구민 인지도 조사
- 브랜드 개발 자문위원회,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브랜드 개발 방향 및 전략수립, 개발 콘셉트 테마 도출
- 브랜드 기본·응용디자인 시스템, 매뉴얼 등 개발

○ 그 간 추진실적

- 2015. 7월~8월 : 마포브랜드 개발을 위한 스터디 그룹 구성 및 운영
- 2015. 9. 2. : 마포브랜드 개발 스터디 연구 결과 보고
- 2015. 10. 2 : 마포 통합브랜드개발 계획 수립

5. 신문 라이선스상품 판매가격 (이용기관 규모별)

(신문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구분	임직원(정원) 수	내부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	비고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2그룹	2천명 이상~3천명 미만	220,000	385,000	
3그룹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165,000	330,000	☞ 마포구
4그룹	5백명 이상~1천명 미만	121,000	231,000	
5그룹	1백명 이상~5백명 미만	88,000	198,000	
6그룹	1백명 미만	55,000	165,000	

※ 2015년 하반기 부터는 지상파【MBC, SBS, YTN (KBS는 연내 계약 완료 예정)】
 보도채널 등 방송매체 뉴스도 뉴스저작권 라이선스 상품 판매를 통해 뉴스저작권
 물 이용 허락을 하고 있음.

뉴스콘텐츠 합법적인 이용 방법

□ 뉴스저작권 개요

○ 뉴스저작물 개념

-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①항에 명시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 보유 주체

-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권 보유

□ 주요 위반 사례

-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내부 인트라넷에 올려 내부직원이 공유하는 경우
-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뉴스를 허락 없이 무단 복제, 게재하는 경우
- 뉴스를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

-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 게재하거나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단순링크* 방식 활용
- 뉴스저작물 구매를 통한 활용

- 저작권자(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한 뉴스콘텐츠 구매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8 문의

□ 뉴스저작권 이용 상품 판매가격 (2014년 7월 ~)

- 신문 라이선스상품 가격 구조

(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상품	이용료	내부직원용			외부홍보용	
		전자스크랩	내부게시판	모바일	홈페이지	대외발송
내부 라이선스	55,000 ~ 275,000	55,000 ~ 275,000			-	
통합 라이선스	165,000 ~ 440,000	55,000 ~ 275,000			110,000 ~ 165,000	

- ※ 기존 전자스크랩 전용 상품(매체당 월 19,800원)은 저작권자인 언론사 요청에 의해 판매 중단
 - 내부 및 통합 라이선스에 전자스크랩 ID 기본 2개 포함 제공(1개 추가 당 사용료 20,000원 추가)
- ※ 모바일 : 내부게시판에 게재한 뉴스를 내부직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하는 서비스
- ※ 영리적·상업적 이용 불가(영리적 라이선스는 별도 문의)

- 신문 라이선스상품 판매가격 (이용기관 규모별)

(신문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구분	임직원(정원) 수	내부 라이선스	통합 라이선스	비고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2그룹	2천명 이상~3천명 미만	220,000	385,000	
3그룹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165,000	330,000	☞ 마포구
4그룹	5백명 이상~1천명 미만	121,000	231,000	
5그룹	1백명 이상~5백명 미만	88,000	198,000	
6그룹	1백명 미만	55,000	165,000	

- ※ 전국적 단위의 사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청), 헌법기관은 1그룹 적용
- ※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행정 소속기관, 입법/사법 지방청 등 그 외 공공부문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6개 그룹 차등

○ 방송 라이선스상품 판매가격 (이용기관 규모별)

(방송매체당 월 판매가격, 단위: 원)

구분	임직원 수 (정원)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II	통합라이선스II	프리미엄 라이선스
1그룹	3천명 이상	275,000	440,000	575,000	740,000	K 마포구 판매가격 별도협의
2그룹	2천명이상 ~ 3천명미만	220,000	385,000	520,000	685,000	
3그룹	1천명이상 ~ 2천명미만	165,000	330,000	465,000	630,000	
4그룹	5백명이상 ~ 1천명미만	121,000	231,000	421,000	531,000	
5그룹	1백명이상 ~ 5백명미만	88,000	198,000	388,000	498,000	
6그룹	1백명미만	55,000	165,000	355,000	465,000	

제공 및 이용범위	기본 서비스		추가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내부라이선스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II	통합라이선스II	프리미엄 라이선스
기사 텍스트 및 링크 제공	○	○	○	○	제공 및 이용범위 별도협의
영상(스트리밍) 제공	×	×	○	○	
전자스크랩+내부게시판+모바일	○	○	○	○	
홈페이지 게재+대외 메일 발송	×	○	×	○	
기관 내 모니터 뉴스영상 송출	×	×	○	○	

※ 추가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에 영상(스트리밍) 제공 + 제공 영상에 대한 기관 내 모니터 송출권한 부여

※ 전국적 단위의 사무를 수행하는 정부부처(청), 헌법기관은 1그룹 적용. 그 외 공공부문은 임직원 정원에 따라 차등

※ 기업체 등 민간부문의 기관 구분은 직원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며, 임원은 등기 및 미등기 임원 모두 포함

※ 영리적·상업적 이용 불가(영리적 라이선스는 별도 문의)

□ 동영상 다운로드 상품 구매 조건

- 다운로드한 동영상뉴스는 사옥 및 사업장 등 옥내 모니터상 노출로 제한함
- 홈페이지 게재할 경우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개(다운로드 금지)
- 이용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뉴스여야 함
- 방송사의 뉴스동영상은 SNS에서 사용불가
- 다운로드 콘텐츠 수는 매체당 월 10건으로 제한함(10건 이상 추가 다운로드시 별도 비용 발생)
- 다운로드 콘텐츠는 이용계약시 설정한 목적에만 사용가능하며, 무단유포 및 재배포 금지
- 다운로드 콘텐츠는 본래 약정한 목적 이외 무단편집 불가
- 특정 상품의 직접 광고로 활용하거나 타 단체 기업 등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는 리포트 자체를 비판 반박하기 위한 이용을 금하며, 위반시 민·형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참여 언론사 현황(71개 언론사, 82개 매체)

(2015년 11월 기준)

구분	매 체 명	매 체 수
전국종합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
지역종합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33
경제지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9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스포츠경향,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	4
영자지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지	환경일보,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3
주간지	중앙선데이, 기자협회보	2
지역주간지	당진시대, 옥천신문, 흥성신문	3
인터넷신문	대덕넷, BreakNews, 데일리안, EBN산업뉴스, 노컷뉴스, 뉴스핌, PD저널	7
어린이신문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주니어헤럴드	4
방송사	MBC, SBS, YTN (KBS는 연내 계약 완료 예정)	3
계		82